

# 김포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 3369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 
제출자

2023. 11. 16.  
권민찬 의원

## 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2023년 11월 16일 권민찬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- 2023년 8월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의장의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·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조례에 규정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청구인명부 제출 후 수리 및 각하 결정기한 신설(안 제10조의2)
- 사무협조 사항 중 청구권자 확인 사무 추가(안 제12조제1호)

## 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인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·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사무협조 사항 중 청구권자 확인 사무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 5. 별첨자료(주민발안제도 개요)

### ○ 의 의

- 일정 주민수 이상이 연대서명하여 지방의회에 주민이 만든 조례안의 발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

### ○ 청구권자

- 만 18세 이상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주민(단, 선거권 없는 자 제외)
- 외국인은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외국인 등록포에 등록된 자

### ○ 청구방법 : 청구서 제출(조례안 첨부)

※ 온라인 청구 가능('주민e직접' 플랫폼)

### ○ 청구요건 :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× 1/100 이상 연대 서명

※ 김포시(2023년): 3,934명 이상 연서(청구권자 총수 393,317명 × 1/100)

### ○ 청구현황

- 99년 「지방자치법」에 도입,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정·시행('22)
- 현재까지 총 380건 청구('23. 9 전국기준) ※김포시 현재까지 청구 없음.

구분	계	'00	'01	'02	'03	'04	'05	'06	'07	'08	'09	'10	'11	'12	'13	'14	'15	'16	'17	'18	'19	'20	'21	'22	'23
합계	380	4	12	2	48	30	47	7	11	4	9	15	6	5	6	7	7	4	14	3	28	9	25	42	35

### ○ 추진 절차

